

제19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 
(제2차 본회의)

2013. 7. 25.(목) 10:00~

# 의안 심사 보고서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## 【 목 차 】

의 안 번 호	건 명	페이지
2013 ~ 60	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	2
2013 ~ 61	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	5

# 〔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. 7. 2.

나. 제출자 : 조선제 · 조기원 · 이애숙 · 이성복 · 김재권 ·  
강창남 · 백범영 · 안철우 · 강철우 의원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7. 2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7. 12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의회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제1장 총칙
  - 정의(안 제2조), 적용 범위 등(안 제3조)
-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
  - 겸직신고 의무(안 제7조)

- 영리행위 제한(안 제8조)
- 회의출석 의무(안 제9조) ⇒ 불참시 의정활동비 감액 규정

### ○ 제3장 행동강령

-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(안 제13조)
- 이권 개입 등의 금지(안 제14조)
-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, 금전 거래 등 제한(안 제17조, 제22조)
- 의원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(안 제18조)
- 국내외 활동 제한(안 제19조) ⇒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
-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(안 제23조)
-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(안 제25조)
-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(안 제27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의회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
- 나.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## 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**7. 심사결과** : 원안가결

**8. 소수의견 요지** : 해당없음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** : 해당없음

# 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. 7. 2.

나. 제출자 : 조선제 · 조기원 · 이애숙 · 이성복 · 김재권 ·  
강창남 · 백범영 · 안철우 · 강철우 의원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7. 2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7. 12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업무추진비 사용·집행 (안 제3조)
-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(안 제4조)
-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(안 제6조)
-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(안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규칙안은 「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
- 나. 이 규칙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